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합113656 판결 [구상금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전광식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8.부터 2020. 11. 11.까지 연 5%의,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김현주, 판사 강창호

별지1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2. 11.경 에너지 개발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 2020. 3. 13.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1. 4.경 목재칩 및 톱밥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의 공동대표이사 중 D는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6. 10. 25.까지 대표
이사로, 2016. 10. 25.부터 2018. 5. 9.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8. 5. 10.부터 현재
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순차 등기되어 있었다. 특히 D의 경우 2003. 6. 30. 원고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2. 11. 해임되었으나 2008. 9. 29. 대구고등법원 2007나
2948 이사해임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확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기가 회복된 바
있고, 2016.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합25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7. 3. 14.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의 2012. 6. 7.자 물상보증

피고는 2012. 6. 7.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E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이다.

2) 원고의 2012. 8. 14.자 물상보증

피고와 E조합 사이의 2012.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2012. 8.
14. 이 사건 E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당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F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F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이다.

3) 원고의 변제

원고는 2013. 7. 16.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당시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5억 원으로 2013. 7. 17. 피고의 F조합에 대한 위 2012. 8. 14.자 대출금채무 15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F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7. 17. 원고가 물상보증한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민법 제370조 및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15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그 중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끝.

별지2

부동산 목록

1. 경북 의성군 H 공장용지 4,222㎡
1. 경북 의성군 I 공장용지 1,728㎡
1. 경북 의성군 J 공장용지 1,058㎡
1. 경북 의성군 K 공장용지 1,059㎡
1. 경북 의성군 L 공장용지 1,047㎡
1. 경북 의성군 M 공장용지 1,058㎡
1. 경북 의성군 N 공장용지 792㎡
1. 경북 의성군 O 공장용지 4,493㎡
1. 경북 의성군 P 공장용지 585㎡
1. 경북 의성군 Q 공장용지 1,865㎡
1. 경북 의성군 R 공장용지 6,795㎡
1. 경북 의성군 S 공장용지 176㎡
1. 경북 의성군 T 공장용지 2,567㎡
1. 경북 의성군 U 공장용지 1,084㎡
1. 경북 의성군 V 공장용지 2,833㎡. 끝.

